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67

발의연월일: 2025. 6. 5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연희・한정애

이건태 · 강준현 · 이정문

조인철 · 정일영 · 손명수

안도걸 · 이재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 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.

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,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.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그 밖에"를 "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, 그 밖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	제1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	②
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 차량,	
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, 그	<u>入</u>]
<u>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	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
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	량, 그 밖에
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	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	
감면하지 아니하되, 그 구체적	
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